# CRC

### 물질안전보건자료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6-56® Multi-Purpose Lubricant

제품번호 06007 나.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다목적 윤활제

다. 공급자정보

회사명 CRC Industries, Inc. 주소 885 Louis Dr.

Warminster Pa 18974

USA

**전화번호** 일반 정보 215-674-4300

기술 지원 800-521-3168 고객 서비스 800-272-4620

웹사이트 <a href="http://crcindustries.com/ei/">http://crcindustries.com/ei/</a>

**긴급전화번호** 24-HourEmergency 800-424-9300(US)

(CHEMTREC)

라. 수입공급자정보

회사명 수도엔터프라이즈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36동 107호

전화번호 032-589-3675 팩스번호 032-589-3677

이메일 sudo@sudokiup.co.kr

####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물리적 위험성 인화성 에어로졸 압축가스

압축가스압축가스건강 유해성피부 자극성구분 1흡인 유해성구분 1

**환경 유해성** 수생 환경에 유해, 급성 위험 구분 3

OSHA 규정 위험성 분류되지 않음.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 문구 국인화성 에어로졸, 압축가스 포함. 가열되면 폭발할 수 있음. 삼키거나 기도로 흡입 하면

치명적일 수 있음. 알러지 피부반응을 야기할 수 있음. 수생생물에 해로움.

예방 조치 문구

예방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불꽃 또는 기타 발화원에 분무하지 마시오.

압력용기: 사용 후 구멍을 뚫거나 태우지 마시오. 장비에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적용하지 마시오 표시등, 히터 등 모든 점화원을 끄십시오. 증기가 쉽게 축적되고 점화 될 수 있음. 환기가 충분히 되는 곳에서만 사용하시오. 사용하는 동안 모든 증기가 사라질 때 까지 환기하시오. 문과 창문을 열고 사용하는 동안 제품이 건조 되도록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시오. 라벨에 표시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환기를 증가 시키거나 지역에서 벗어나시오. 가스, 미스트 또는 증기를 흡입하지 마시오. 오염된 작업복은 작업장 밖에서 착용하지 마시오.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환경으로 배출

구분 1

하지 마시오.

**대응** 섭취시: 즉시 중독센터 의사에게 연락하시오. 구토를 하지마시오. 피부접촉시: 많은양의 물로

씻어내시오. 피부자극 또는 발진발생시: 의학적 도움을 받으시오. 재사용전 의복을 세척하시오.

저장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밀봉하여 보관하시오. 직사광선을 피하고 50℃ 이상의 온도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높은 온도에 노출 될 시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음.

폐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 다. 분류되지 않는 위험성(HONC)

정적 축적되는 인화성 액체는 지상에 설치된 설비에서 조차도 정전기적 부하가 생길 수 있음. 스파크는 액체나 증기를 점화시킬 수 있음. 화재나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혼합물		
<u>화학물질명</u>	CAS 번호	(%)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가벼운	64742-47-8	60 - 70
(Distillates(petroleum), hydrotreated light)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무거운	64742-70-7	10 - 20
(Paraffin oils(petroleum), catalytic dewaxed heavy)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가벼운	64742-71-8	5 - 10
(Paraffin oils(petroleum), catalytic dewaxed light)		
디프로필렌 그리콜 모노메칠 에테르 아세테이트	88917-22-0	3 - 5
(Di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acetate)		
n-부틸 스테아레이트(n-Butyl stearate)	123-95-5	3 - 5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124-38-9	1 - 3
페트롤라튬(petrolatum)	8009-03-8	1 - 3
지방산, C18-unsatd, Dimers	61788-89-4	< 1
(Fatty Acids, C18-unsatd, Dimers)		
d-리모넨(d-Limonene)	5989-27-5	< 0.2
테르피놀렌(Terpinolene)	586-62-9	< 0.2

특정 화학 물질 및 구성의 비율은 영업비밀로 하고 있음.

#### 4. 응급조치 요령

**가. 흡입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증상이 발전하거나 지속될 경우 내과의사에게 연락하시오

**나. 피부 접촉시** 오염된 의복을 즉시 벗고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 습진 또는 기타 피부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의학적 도움을 받고 지시를 따르시오.

**다. 눈 접촉시** 물로 씻을 것. 자극이 지속되거나 발전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라. 섭취시** 즉시 의사 또는 중독센터에 연락할 것. 토하게 하지 말 것. 환자가 토하는 경우 구토물이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머리를 낮출 것.

마. 중요 증상 흡입은 폐부종과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알러지 피부반응을 야기할 수 있음. 피부염. 발진.

급성 및 효과지연시

**바. 즉각적인 의료처치** 일반적인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증상에 따라 치료. 증상이 지연될 시 관찰 및 유지.

및 특별치료 필요시

**사. 일반적인 조치사항** 의료기관에 함유된 물질에 대해 알리고, 예방을 위한 주위사항을 들을 것. 재 사용전 오염된

의복을 세척할 것.

####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소화제** 물안개, 내알콜성 포말, 건조 화학물, 이산화탄소(CO2), 건조 화학 분말, 작은 화재에는 모래나

흙을 사용.

**부적절한 소화제** 알려진 바 없음.

**나. 화학물질로부터** 내용물이 가압상태. 열 또는 화염에 노출되어진 가압용기는 파열될 수 있음. 이 제품은 약한 전

생기는 특정 유해성 기전도성이 있으므로 정전기적 부하가 생길 수 있음. 충분한 부하가 축적되면, 인화성 혼합물의

점화가 일어날 수 있음. 정전기적 축적은 소량의 물과 다른 오염물질에 의해 상당히 증가될 수

있음. 물질은 물에 뜨고 물표면에서 점화가 일어날 수 있음. 화재시 유해가스가 생길 수 있음.

**다. 화재 진압시 착용할** 화재 진압자는 방화복, 안면 보호구가 있는 헬멧, 보호장갑, 고무 장화 착용 및 밀폐된 공간에 보호구 및 주의사항 서는 (SCBA) 표준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

**라. 화재 진압 장비** 화재시 안전하다면 누출을 중지할 것. 위험이 없다면, 위험 용기를 화재 지역으로부터 이동. 위

험이 없는 경우 물 분무로 열에 노출된 용기를 냉각하고 제거할 것. 용기는 증기압이 축적되지

않도록 냉각 할 것.

**마. 일반 화재 위험성** 국인화성 에어로졸. 가압용기. 열 또는 화염에 노출되어진 가압용기는 파열될 수 있음.

####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필요없는 인원은 멀리 대피시킬 것. 누출 지역으로부터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사람들을 대피시킬 것. 주변지역에 모든 점화원을 제거할 것. 저지대 밖으로 나갈 것. 대부분의 가스는 밀 폐된 공간이나 낮은 곳에서 공기보다 무거워 지면을 따라 확산됨.(하수구, 지하실, 탱크) 청소시 적절한 보호 장비와 의류를 착용할 것. 증기나 미스트 흡입을 피할 것. 응급 처치 요원은 자가호 흡 장치가 필요.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을 만지지 말 것. 밀 폐된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환기할 것.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봉쇄할 것. 누출이 심각해 통 제 할 수 없다면 관할 기관에 보고 할 것. 개인보호구에 관한 사항은 MSDS 8항참조.

### 조치사항

나. 정화 또는 제거방법 모든 점화원을 제거할 것(흡연, 섬광, 스파크나 화염 등, 금지) 누출물로부터 가연성 물질(나무, 종이, 기름 등)을 멀리할 것. 이 제품은 물에 혼합됨.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것. 흡착재질(예:천, 플리스(fleece))로 표면을 철저히 깨끗하게 닦을 것. 폐기물 처리를 위해 MSDS 제 13항 참조.

다. 환경을 보호하기

환경으로 배출하지 말 것.

위한 필요 조치사항 감독자에게 적절한 관리를 알릴 것. 안전하다면 더 이상의 누출이나 유출을 방지할 것. 하수구 배수로 및 물이 나오는 지상으로 배출하지 말 것.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봉쇄할 것.

####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인화성이나 연소성물질(연소성 먼지, 정적 축적액체 포함) 또는 공존할 수 없는 물질과의 위험 한 반응으로 부터 화재 위험을 최소화 할 것. 압력용기: 사용 후에도 구멍을 뚫거나 태우지 말 것. 분무버튼이 없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사용하지 말 것. 노출된 불꽃 또는 백열성 재질에는 분 무하지 말 것. 사용 도중 혹은 스프레이 표면이 마르기 전까지 흡연불가. 용기를 절단, 용접, 납땜, 천공, 연마하지 말고, 또한 열, 화염, 불꽃, 또는 다른 점화요인에 용기를 노출시키지 말 것. 통전 장비 주위에 주의를 할 것. 생물과 접촉할 경우 금속용기는 통전이 될 수도 있음. 충격 및 화재로 사용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 가스, 미스트, 증기 흡입을 피할 것. 눈, 피부, 옷의 접촉을 피할 것. 피부에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접촉을 피할 것. 장기간 노출을 피할 것. 환기가 잘되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것. 환경으로 배출하지 말 것. 모범적인 산업 위생 관행을 준수 할 것. 제품사 용 지침은 제품 라벨을 참조 할 것.

#### 나.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구분3 에어졸 용기

가압용기, 직사광선을 피하고 50℃ 이상의 온도에 노출시키지 말 것. 구멍을 내거나 소각하거나 압력을 주지 말 것. 개방된 화염, 열 또는 다른 점화원 가까운 곳에서 보관 또는 취급하지 말 것 이 물질은 정전기를 축적해서 스파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점화 요인이 될 수 있음. 스파크 발달을 피하시오. 이것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도 정전기 제거하기에는 불충분함.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 할 것. 공존 할 수 없는 물질과 멀리하여 보관할 것.(본 MSDS 10항참조)

#### 8. 노출방지/개인보호구

####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US.	<b>OSHA</b>	(미=	국직업	안전:	위생국)

_구성성분	종류	값	형태
지방산, C18-unsatd, Dimers(CAS 61788-89-4)	TWA	5 mg/m3	Respirable
(Fatty Acids, C18-unsatd, Dimers)			
US. OSHA(미국직업안전위생국) Z-1 공기 오염 물질에 대한 제한 (29 CFR 1910.1000)			

<u>구성성분</u>	종류	값	형태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CAS 124-38-9)	PEL	9000 mg/m3	_
		5000 ppm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무거운(CAS 64742-70-7)	PEL	5 mg/m3	Mist.
(Paraffin oils(petroleum), catalytic dewaxed heavy)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가벼운(CAS 64742-71-8)	PEL	5 mg/m3	Mist.
(Paraffin oils(petroleum), catalytic dewaxed light)			
페트롤라툼(Petrolatum)(CAS 8009-03-8)	PEL	5 mg/m3	Mist.
US.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구성성분	종류	값	형태
지방산, C18-unsatd, Dimers(CAS 61788-89-4)	STEL	10 mg/m3	Respirable
(Fatty Acids, C18-unsatd, Dimers)			
	TWA	5 mg/m3	Respirable
US.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Threshold 기준값			
구성성분	종류	값	형태

STEL

30000 ppm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CAS 124-38-9)

	TWA	5000 ppm	
n-부틸 스테아레이트(n-Butyl stearate)(CAS 123-95-5)	TWA	10 mg/m3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무거운(CAS 64742-70-7)	TWA	5 mg/m3	Inhalable fraction
(Paraffin oils(petroleum), catalytic dewaxed heavy)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가벼운(CAS 64742-71-8)	TWA	5 mg/m3	Inhalable fraction
(Paraffin oils(petroleum), catalytic dewaxed light)			
페트롤라튬(petrolatum)(CAS 8009-03-8)	TWA	5 mg/m3	Inhalable fraction
US. NIOSH(미국직업안전건강연구소) 화학물질 유해성 포켓기	H이드	_	
구성성분	종류	값	형태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CAS 124-38-9)	STEL	54000 mg/m3	
		30000 ppm	
	TWA	9000 mg/m3	
		5000 ppm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가벼운(CAS 64742-47-8)	TWA	100 mg/m3	
(Distillates(petroleum), hydrotreated light)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무거운(CAS 64742-70-7)	STEL	10 mg/m3	Mist.
(Paraffin oils(petroleum), catalytic dewaxed heavy)			
	TWA	5 mg/m3	Mist.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가벼운(CAS 64742-71-8)	STEL	10 mg/m3	Mist.
(Paraffin oils(petroleum), catalytic dewaxed light)			
	TWA	5 mg/m3	Mist.
페트롤라튬(petrolatum)(CAS 8009-03-8)	STEL	10 mg/m3	Mist.
	TWA	5 mg/m3	Mist.
US. AIHA 작업장 환경 노출 기준(WEEL) 가이드			
구성성분	종류	값	
d-리모넨(d-Limonene)(CAS 5989-27-5)	TWA	165.5 mg/m3	
		20	

나. 생물학적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 기준은 성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음.

**다. 적절한 공학적 관리** (일반적으로 시간당 10회 환기가 되는) 양호한 전체환기를 실시할 것. 환기 속도는 작업장 여건에 맞아야 함. 적용이 가능하면 공정기밀 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기타 공학적 관리를 사용하여 공기중 수준이 권고 노출한계 이하가 되도록 유지시킬 것. 노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공기 중 수준이 허용되는 수준이 되도록 유지시킬 것.

30 ppm

#### 라.개인 보호조치 및 장비

눈/얼굴 보호 안전 측면 보호안경 또는 고글

피부 보호

니트릴, 네오프렌 재질의 보호장갑 착용 손 보호

적절한 내 화학성 의복을 착용할 것. 액체가 침투되지 않는 앞치마 등을 추천. 기타 보호

공학적 관리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립 산업 안전 보건 호흡기 보호 연구소(NIOSH)에서 승인한 카트리지를 사용 할 것. 밀폐된 공간에서 비상시 자급식 호흡장치

사용할 것. 공기 모니터링은 실제 직원에게 적용되는 노출 수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함.

열위험 필요시 적절한 열 보호복 착용.

마. 일반적 위생 사용중에는 금연. 사용중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 것. 항상 제품을 사용한 후에나, 음

식물 섭취 또는 흡연전에 항상 씻는것과 같은 양호한 개인 위생 기준을 준수 할 것. 오염물질 제

거를 위해서 작업복이나 보호 장비를 정기적으로 세척 할 것. 오염된 작업복은 작업장 밖에서

사용하지 말 것.

#### 9. 물리화학적 특성

고려사항

#### 가. 외관 (물리적 상태, 색 등)

물리적 상태 액체. 형태 에어로졸. 색상 푸른 녹색. 나. 냄새 상쾌한 다. 냄새 역치 자료없음. 자료없음. 라. pH

마. 녹는점/어는점 -49℃ (-56.2℉) 추정됨 바. 초기 끓는점과 193.3℃ (380°F) 추정됨 끓는점 범위

**사. 인화점** 88.9°C (192°F) 태그 밀폐식

 아. 증발 속도 느림.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인화 또는 폭발 0.6% 추정됨

범위의 하한

**인화 또는 폭발** 5.5% 추정됨

범위의 상한

가. 증기압1431 hPa 추정됨타. 증기밀도> 1 (공기 = 1)파. 상대밀도0.84 추정됨하. 용해도(물)무시해도됨.거. n-옥탄올/물자료없음.

분배계수

**너. 자연발화 온도** 220°C (428°F) 추정됨

더. 분해 온도자료없음.러. 점도(운동)자료없음.버. 휘발도88.6% 추정됨

####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반응성** 제품은 통상의 사용, 저장 및 운송조건에서는 안정하고 비반응성임.

**나. 화학적 안정성**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물질은 안정함.

**다. 유해 반응의 가능성**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위험한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라. 피해야 할 조건** 열, 불꽃, 스파크, 인화점을 초과하는 온도를 피해야 함. 혼합되지 않는 물질을 피해야 함.

**마. 피해야 할 물질** 강산화제.

바. 분해시 생성되는 탄소 산화물. 황 산화물. 탄화수소.

유해물질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흡입시장기간 흡입은 유해할수 있음.피부 접촉시알러지 피부반응을 야기할 수 있음.

**눈 접촉시** 눈에 직접 접촉시 일시적인 자극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섭취시 섭취 또는 구토를 통해서 제품액이 폐로 흡입 될 시, 심각한 화학폐렴을 야기할 수 있음.

나. 증상관련

물리적,화학적 및 흡입은 폐부종과 폐렴을 야기할 수 있음. 두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피부 알러지 반응을 야기할

**독성학적 특성** 수 있음. 피부염. 발진.

다. 독성 영향 정보

급성 독성 삼키거나 기도를 통해 들어갈 경우 치명적일 수 있음. 알러지 피부반응을 야기할 수 있음.

제품 종 시험 결과

6-56® Multi-Purpose Lubricant

급성

경피

LD50 토끼 2143 mg/kg 추정됨

경구

LD50 쥐 4855 mg/kg 추정됨

\*제품에 대한 추정치는 추가 성분 데이터에 기초할 수 있음.

지부 부식성/자극성 장기간 피부 접촉시 일시적 자극을 야기할 수 있음. 심한 눈 손상/자극성 눈에 직접 접촉시 일시적 자극을 야기할 수 있음.

호흡기 과민성호흡기 과민성을 일으키지 않음.피부 과민성알러지 피부반응을 야기할 수 있음.

생식세포 변이원성 제품 또는 어떤 성분으로 0.1%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유전독성이나 돌연변이 유발성에

대한 자료는 없음.

**발암성** 이 제품은 IARC, ACGIH, NTP, OSHA에 의해 발암물질로 해당 없음.

IARC 모노그래프. 발암의 전반적 평가

d-리모넨(d-Limonene)(CAS 5989-27-5)

구분3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구분3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Paraffin oils(petroleum), catalytic dewaxed light)

미국 국립 독성 프로그램 (NTP) 발암물질 보고서

등록되지 않음

미국 OSHA 특별 규제물질 (29 CFR 1910.1001-1050)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가벼운(CAS 64742-71-8)

규제되지 않음

생식독성 이 제품은 생식이나 발달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분류되지 않음.

(1회 노출)

특정 표적장기 독성 분류되지 않음.

(반복 노출)

**흡인 유해성** 삼키거나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삼키거나 구토로 인해 기도 또는 폐로 유입되면

화학적 폐렴을 일으키거나 폐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음.

**만성적 영향**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음.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상태독성** 수생 생물에 유해.

제품 종 시험 결과

디프로필렌 그리콜 모노메칠 에테르 아세테이트(CAS 88917-22-0)

(Di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acetate)

수생

급성

갑각류 LC50 물벼룩 2701 mg/l, 48시간

(Daphnia magna)

어류 LC50 잉어과 물고기 151 mg/l, 96시간

(Pimephales promelas)

무지개송어, 도날드슨송어 111 mg/l, 96시간

(Oncorhynchus mykiss)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가벼운(CAS 64742-47-8)

(Distillates(petroleum), hydrotreated light)

수생

급성

어류 LC50 블루길 2.2 mg/l, 96시간

(Lepomis macrochirus)

d-리모넨(d-Limonene)(CAS 5989-27-5)

수생

갑각류 EC50 물벼룩 69.6 mg/l, 48시간

(Daphnia pulex)

어류 LC50 잉어과 물고기 0.619 - 0.796 mg/l, 96시간

(Pimephales promelas)

\*제품에 대한 추정치는 추가 성분 데이터에 기초할 수 있음.

나. 잔류성 및 농축성 이 제품의 분해성에 대한 자료가 없음.

**다. 생물 농축성** 자료없음.

n-octane/water (log Kow) 분할계수

디프로필렌 그리콜 모노메칠 에테르 아세테이트(CAS 88917-22-0) 0.61 OECD 107

(Di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acetate)

d-리모넨(d-Limonene)(CAS 5989-27-5) 4.232

지방산, C18-unsatd, Dimers(CAS 61788-89-4) 1 - 2.5, logKow

(Fatty Acids, C18-unsatd, Dimers)

테르피놀렌(Terpinolene)(CAS 586-62-9) 4.23

**라. 토양 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본 성분으로부터 부정적인 환경 영향 (예: 오존층 감소, 광화학적 오존 발생 가능성, 호르몬 붕괴,

지구 온난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임.

####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물의 처분 분배 액체 제품은 RCRA 유해 폐기물(See 40 CFR Part 261.20 - 261.33참조)이 되지 않음. 빈

**잔류 / 미사용제품** 용기는 재활용 할수 있음. 수집 및 회수 또는 허가 받은 밀봉 용기에 폐기. 가압상태. 구멍을 내

거나 소각 또는 분쇄하지 말 것. 물질이 배수를 통해 하수구 또는 수로로 유입하지 말 것. 화학물 또는 사용한 용기로인해 연못, 수로 또는 도랑을 오염시키지 말 것. 적용 규정에 따라 폐기 할것.

나. 유해 폐기물 코드 규제 되지 않음.

**다. 오염된 용기** 빈 용기에 잔류물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라벨 경고문에 따라 잔류물 처리.

빈 용기는 재활용 또는 폐기를 위해 허가된 폐기물 처리장에 수집 되어야 함.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DOT

**UN 번호** UN1950

UN 적정 선적 이름 에어졸, 인화성, 수량제한

운송 유해 등급

등급 2.1 부수적위험 -라벨(s) 2.1

**포장그룹** 해당내용 없음.

사용자특별조치사항 취급 전에, 주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응급처치사항 등을 참조 할것.

특별조항N82포장예외306포장비벌크없음포장벌크없음

나. IATA

UN 번호UN1950UN 적정 선적 이름에어졸, 인화성

운송 유해 등급

등급 2.1 부수적위험 -

**포장그룹** 해당내용 없음.

ERG Code 10L

사용자특별조치사항 취급 전에, 주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응급처치사항 등을 참조 할것.

기타 정보

**승객 및 화물 운송기** 제한허용 **화물 운송기** 제한허용

다. IMDG

UN 번호 UN1950

UN 적정 선적 이름 에어졸, 수량제한

운송 유해 등급

**등급** 2 부수적위험 -

**포장그룹** 해당내용 없음.

환경적 유해요소

**해상오염** 없음 **EmS** F-D, S-U

사용자특별조치사항 취급 전에, 주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응급처치사항 등을 참조 할것.

#### 15. 법적 규제현황

가. 미국 연방 정부 규정 OSHA 위험요소, 29 CFR 1910. 1200.의 규정에 따라 이 제품은 '유해 화학 물질'이다.

TSCA Section 12(b) Export Notification (40 CFR 707, Subpt. D)

규제되지 않음

SARA 304 Emergency release notification

규제되지 않음

US. OSHA Specially Regulated Substances (29 CFR 1910.1001-1050)

규제되지 않음

US EPCRA (SARA Title III) Section 313 - Toxic Chemical: Listed substance

등록되지 않음

#### **CERCLA Hazardous Substance List (40 CFR 302.4)**

등록되지 않음

#### **CERCLA Hazardous Substances: Reportable quantity**

등록되지 않음

유출되거나 성분의 손실이 발생 될 시 국가대응센터 또는 지역 비상 계획 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함.

#### Clean Air Act (CAA) Section 112 Hazardous Air Pollutants (HAPs) List

규제되지않음

#### Clean Air Act (CAA) Section 112(r) Accidental Release Prevention (40 CFR 68.130)

규제되지 않음

#### Safe Drinking Water Act(SDWA)

규제되지 않음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규제되지 않음

#### 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of 1986 (SARA)

 Section 311/312
 즉각적 위험 - 있음

 Hazard categories
 지연된 위험 - 없음

 화재위험 - 있음

압력위험 - 있음 반응위험 - 없음

SARA 302 Extremly 없음

hazardous substance

#### 나. 미국 주 정부 규정

## US. California. Candidate Chemicals List. Safer Consumer Products Regulations (Cal. Code Regs, tit. 22, 69502.3, subd.(a))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가벼운(CAS 64742-47-8)

(Distillates(petroleum), hydrotreated light)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무거운(CAS 64742-70-7)

(Paraffin oils(petroleum), catalytic dewaxed heavy)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가벼운(CAS 64742-71-8)

(Paraffin oils(petroleum), catalytic dewaxed light)

페트롤라튬(petrolatum)(CAS 8009-03-8)

#### US. New Jersey Worker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CAS 124-38-9)

## US. California Controlled Substances. CA Department of Justice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1100)

등록되지않음.

#### **US. Massachusetts RTK - Substance List**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CAS 124-38-9)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무거운(CAS 64742-70-7)

(Paraffin oils(petroleum), catalytic dewaxed heavy)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가벼운(CAS 64742-71-8)

(Paraffin oils(petroleum), catalytic dewaxed light)

#### US. New Jersey Worker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가벼운(CAS 64742-47-8)

(Distillates(petroleum), hydrotreated light)

#### **US. Rhode Island RTK**

등록 되지 않음.

#### US. Pennsylvania Worker and Community Right-to-Know Law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CAS 124-38-9)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가벼운(CAS 64742-47-8)

(Distillates(petroleum), hydrotreated light)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무거운(CAS 64742-70-7)

(Paraffin oils(petroleum), catalytic dewaxed heavy)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가벼운(CAS 64742-71-8)

(Paraffin oils(petroleum), catalytic dewaxed light)

#### **US. California Proposition 65**

California 음용수와 독성 강화 법령 1986 (Proposition 65):

이 제품은 발암물질이나 생식 독성물질로 현재 분류되는 어떠한 화학물질도 함유하고 있지 않음.

#### 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규정

**EPA** 

VOC content (40 CFR 51.100(s)) 97.5%

Consumer products(40 CFR 59, Subpt. C) 규제되지 않음.

이 제품은 다목적 윤활제로 규정됨. 이 제품은 전체 50개 주에서 **Consumer products** 

호환 사용됨.

VOC content (CA) 0% **VOC content (OTC)** 0%

#### 라. International Inventories

Country(s) or region	Inventory name	Inventory (yes/no)
Australia	Austalian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AICS)	아니오
Canada	Domestic Substances List (DSL)	아니오
Canada	Non-Domestic Substances List (NDSL)	아니오
China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n China (IECSC)	예
Europe	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아니오
	Substances(EINECS)	
Europe	European List of Notified Chemical Substances (ELINCS)	아니오
Japan	Inventory of Existing and New Chemical Substances (ENCS)	아니오
Korea	Existing Chemicals List (ECL)	아니오
New Zealand	New Zealand Inventory	아니오
Philippines	Philippine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아니오
	(PICCS)	
United State & Puerto Rico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Inventory	예

<sup>&</sup>quot;예"는, 본 제품의 모든 성분이 정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요구목록에 부합되며,

####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작성일자	2016년 03월 28일
나. 개정일자	2016년 04월 14일
다. 작성자	Allison Cho
라. 버전#	04
	CDC # F10F

마. 추가정보 CRC # 510F 바. HMIS 등급 건강성:1 인화성:3 물리적위험:0 개인적보호: B 사. NFPA 등급 건강성 : 1

인화성: 3 불안전성:0

#### 아. NFPA 등급



#### 자. 부가설명

CRC는 본 정보 및 제품 또는 본 제품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에 대한 모든 조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취급, 보관 및 폐기를 위한 안전 조건을 비롯하여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손실, 부상,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본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있는 정보는 현재 가능한 최고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 라벨에 모든 경고와 지침을 읽고 정보의 자세한 설명은 MSDS에 포함되어 있으며 감독자 또는 안전 보건 전문가의 참조를 받으십시오.

<sup>&</sup>quot;아니오" 는, 본 제품의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이 정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목록에 등록되거나 등록되지 않음